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5.2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9호,
2012.4.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고 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정하는 내용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100호, 2011. 11. 22. 공포, 2012. 5. 23. 시행)됨에 따라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과 식중독균 등 병원성 미생물에 관한 기준에 위반되는 축산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축산물을 수입신고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정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사업장등의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과 연장 절차를 알려 주도록 하며, 영업의 허가 신청등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수수료 금액을 감액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9(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기준원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30일 전까지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 지정(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정서 사본

제2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15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기준”이란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과 식중독균 등 병원성 미생물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제28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축산법령 |

① 검역검사본부장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0일 전까지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별표 11 제2호 나목 중 제6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15조제1항·제3항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경우로서			
1) 수입신고물 거짓으로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 소 폐쇄
2)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표시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 소 폐쇄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 소 폐쇄
4) 축산물의 중량이나 가격을 변조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납·납땜머리 등 이물을 혼입시켜 축산물을 수입신고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 소 폐쇄
나.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축산물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법 제15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다.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축산물을 재수입하는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 소 폐쇄	
라. 수입신고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허가 등을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허가증 등을 재교부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15]

허가 등 수수료(제60조 관련)

구분	수수료
1. 영업의 허가 및 신고	1만원(온라인 신청의 경우 9천원)
2.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1만원(온라인 신청의 경우 9천원)
3. 허가사항 및 신고사항 변경	5천원(온라인 신청의 경우 4천원)
4. 허가증 및 신고증의 재교부	5천원(온라인 신청의 경우 4천원)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도축검사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검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도축 의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도축목적						
출하농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농장명			
가축 운반자	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신청내용	가축의 종류 (품종)	성별	연령	생체량	총수량	개체 식별번호
	수입소의 경우	수출국가명		검역계류장 도착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본문·제1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사관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등질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축산물 수입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시표를 합니다.

(앞쪽)

신고시기	A : [] 본신고 B : [] 자원신고	신고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신고기관	처리기한	서류검사 8일, 관능검사 6일, 정밀검사 18일		
수입 신고인 (수입 화주)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영업신고번호	업 종		
수출자	수출회사명			
	주 소			
거래품명	한글명	모델·규격(제품유형)		
순종량	총 포장개수	과세가격		
B/L번호	화물관리번호			
세번부호	용도	배합비율 및 가공공정 : 뒤쪽에 기재		
유통기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원산지(국가)	수출국			
제조회사명	작업장번호			
입항일	년 월 일	선(기)명		
검사(반입)장소	검사기관			
반입일	년 월 일	선적일시		
선적항	국내도착항			
수입유통식별번호				
고열량·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귀하

210mm×297mm[택상지 80g/㎡ 또는 증일지 80g/㎡]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품목제조보고서

보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상호)		
	소재지		
제품정보	품목의 유형	영업허가번호	
	제품명		
	유통기간	제조일부터	일(월, 년)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용도·용법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포장단위		
	성상		
	고열량·저열량 식품 해당 여부	[]에	[]아니오
기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의 품목을 제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방법설명서 1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축산물만 해당한다) 1부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 1부
------	---

유의사항

1. 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의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규조문 대비표】

구문	신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2011.6.1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4호, 2011.6.15, 타법개정]	[시행2012.5.2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9호, 2012.4.23, 일부개정]
제7조의9(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한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 지정(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9(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기준원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30일 전까지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이 나 그 밖에 가족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2. 지정서 사본	③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한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농장) 지정(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이 나 그 밖에 가족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정서 사본
제21조(축산물의수입신고등)①~⑦(생략)	제21조(축산물의수입신고등) ①~⑦(현행과같음)
	⑧ 법 제15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기준” 이란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과 식중독균 등 병원성 미생물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제28조의5(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신청) ① 법제20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전까지 별지제15호의 6서식의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지정서를 첨부하여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의5(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유효기간 연장 및 재지정신청) ① 검역검사본부장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법제20조제4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날의 40일전까지 연장절차와 해당기간까지 연장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지정서를 첨부하여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재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